

환경 인허가 최근 경향및 점검확인서 발급후 대응방안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1.허가 받는 배출시설 분류의 정합성

◆대기분야

①산업단지 입주확인서에 분류된 산업분류표 적용

- 실제 생산 공정과 산업분류표가 다른경우 변경이나 추가 등록후 허가진행
- 산업분류표에 없는 부분은 공통시설 에서 적용함
ex)보일러, 폐수및 폐기물처리시설, 도장시설 등
3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37.)그 밖의 시설(2020년 1월 1일 부터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명(환경부발간 해설집 참조)

- 대기배출시설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말고 정확한 해석으로 정함 업체에서 관념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아닌 물리,화학적 기능을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파쇄.분쇄시설인데 절단시설로 자의적 해석으로 비배출시설화

용해시설도 넓은의미의 혼합시설인데 비배출시설화

단 배출시설의 분류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각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환경인허가시 검토사항

◆폐수분야

①산업단지 입주확인서에 분류된 산업분류표 적용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는 시설별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표별 신고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82)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시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수배출 공정도 작성시 공정및 부대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폐수를 공정도에 표시하여 희석이나 무단 방류에 대한 법적투명성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보일러블로잉 다운수, 콤퓨레샤용축수, 마뒹청소수 및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시설부분도 공정의 일부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②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폐수배출시설의 적용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로 1일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폐수로 1일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절삭유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시설로서 폐수가 순환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배출공정만 있을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한다.

③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이면 허가 적용기준이하이면 신고로 진행한다.

2.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성질 및 방지시설에서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 대기분야

- ① 연료사용에 따른 발생(먼지, SOX, NOX 등)
- ② 입자상물질 사용에 따른 발생(먼지)
- ③ 사용원료 MSDS 및 금속물질의 DATA SHEET에 따른 성분조성에 따라 특정오염물질 발생여부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의2)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기준농도 이상이면 설치허가 기준농도 이하이면 신고대상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포집방법 및 풍량산출

- ① 대기 인허가상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고 포집방법에 따라 풍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결정되므로 현장의 조건 및 현실에 맞게 관련문헌 및 객관적 설계근거에 의하여 후드설계 및 풍량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오염물질 발생량은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우선적용하고 배출계수가 없을시 EPA자료를 인용하고 EPA자료도 없을시 자가측정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고 최후로 이론적근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 대기인허가시 검토사항

- ① 대기오염방지시설은 가동되는 공정별로 설계를 하고 공정이 다른 부분은 별도로 방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기방지시설 설계시 향후설비증설을 위하여 여유율을 많이 주어 설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오염물질이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향후 배출시설가동과 방지시설가동이 연동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③ 덕트 및 후드를 적정설계를 하여 방지시설 설계 풍량이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입지제한에 관한 타법검토

◆반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

① 입주제한 업종의 환경관련법규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을 사용.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미만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시공하고 운영, 관리 하여야한다. (2021년 2월18일자 시행)

◆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

① 환경관련법규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을 사용. 발생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제한하며 제한시점 이전(1997.9.25)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년 2월18일자 시행)

◆결론적

① 반월국가산업단지내에서 입주제한업종이 아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치의 100분의 50미만 으로 배출시 입주가 가능하고

② 시화국가산업단지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배출되면 입주가 불가능함

③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입주제한지침은 없음

4. 확인서 발급후 대응방안

◆배출시설설치 미이행 으로 확인서 징구시

- ①실제법령상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미신고인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의 미숙지 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법리 검토를 확인서 발급전 확인
- ②위법으로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시 청문절차를 거쳐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및 가동개시신고를 완료하면 시설사용가능
- ③이후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른 처벌

◆공기회석및 기타사항에 의한 확인서 징구

- ①공기회석이나 기타사항으로 위반시 조업정지명령등이 예상되므로 생산계획이나 발주처의 발주계획 등을 확인하여 조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킴
- ②공익적목적이나 수출등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정지가 어려울경우 관련기관에 조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으니 협의바랍니다.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에 따른 위반시

- ①방류수 채수시 동일한 샘플을 자가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이 나오기전 이라도 배출허용 초과 원인을 개선하여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개선부과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목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의 목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들을 검토하여 대기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시설
(원료MSD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반응 에서 발생하여도 해당됨)
-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 환경친화기업지정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100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 또는 폐쇄하는 경우
- 원료 또는 연료 변경하는 경우
- 조업시간등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 변경신고
 -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주요 배출시설설명

반응시설

한 종류 또는 두종류 이상의 물질이 그자신 혹은 상호간에 있어서 원자의 조환을 시행하여 그 조성이나 구조, 성분 등 물리. 화학적성질이 본래와는 다른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혼합시설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화 하는 시설이다.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변화없이 단순히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 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하여 말한다.

용융, 용해시설

고체상태의 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용융시설이라 하며,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을 다른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시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 즉 용체를 만드는 시설을 용해시설이라 한다.
여기서는 원래의 물질이 성질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시설은 혼합시설로 구분한다.

계량시설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또는 부원료를 그 조성 비율에 따라 배합하기 전.후에 평량기 등을 이용하여 그 무게를 다는 시설을 말한다.

분쇄시설

원료인 고체를 쉽게 가공처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체 고분자간의 결합력을 끊어 주는 조작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파쇄기, 분말기)

절단시설

석면 및 압면제품을 제품특성에 맞게끔 일정한 형태나 규격으로 자르는 시설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란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시설
(원료MSD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반응 에서 발생하여도 해당됨)
-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허가대상 시설외의 배출시설
- 허가대상 배출시설임에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 환경친화기업지정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50/100(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또는 1일700톤 이상 증가되는경우
-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 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 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조업시간등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 변경신고
 -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 폐수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로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 배출시설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종합결론

1. 배출시설 설치시 최초로 검토할 사항이 입주확인서상 분류표와 인허가증상에 기재된 산업분류표를 확인하여 현장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하고 업종이 다르면 입주확인서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하며 배출시설허가증의 업종이 맞으면 입주확인서에 기재된 업종을 변경하여 주어야함
2. 대기시설 검토시 먼저 산업분류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시설이 있는지 검토함
다음으로 공통시설에 해당시설이 있는지 검토함
3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37)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지 검토
3.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입주확인서상의 산업분류표와 일치여부를 확인
77)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78)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이화학 시험시설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중 폐수속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82)제1호부터 제81호 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함

***생산공정도에 폐수가 발생하는 모든포인트를 기재하여 희석이나 무단방류로 적발되지 않게 인허가증 상에 기재**